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의 드라이 클리닝 업체 허가 요건 안내서



CLEANERS

I. 개요

이 안내서에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의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업체 허가 및 승인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EP의 프로그램 및 요건 중에서 사업체의 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EP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NYSDEC "Part 232" 규정과 동일한 퍼클로로에틸렌 규정(RCNY, 15조, 12장)을 집행합니다.

NYSDEC 규칙과 마찬가지로 DEP 규칙도 다음을 기준으로 다양한 측정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드라이클리닝 시설이 기존 시설 또는 신규 시설인지의 여부
- ▶ 해당 시설이 독립적 시설 또는 "공존"(주거 시설 또는 사업체와 공용 벽, 바닥 또는 천장을 공유) 시설인지의 여부
- ▶ 공존할 경우, 드라이클리닝 시설이 주거 시설 또는 상업 시설과 공존하는지의 여부.

규칙 RCNY, 15조, 12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II. DEP 배기 법률(AIR CODE) 요건

A. 일반 배기 허가 요건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신규 또는 기존 업체인지에 관계 없이 DEP 영업 허가서와 사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참고: DF 2000, GE Silicon SB32, Green Earth, Solvon K4 등과 같은 기타 용제 사용 사업체들도 영업 허가서와 사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서와 사업 등록증의 신청서는 www.nyc.gov/dep/cats ("Clean Air Tracking System") 을 방문해 주십시오.

상기 신청서는 뉴욕주 면허를 획득한 전문 엔지니어("PE") 또는 뉴욕주 면허를 획득한 건축사("RA")가 (a) 제출한 신청서, 계획 및 모든 보안 서류가 완전하며 해당 법률, 법령, DEP의 환경 준법국(Bureau of Environmental Compliance)의 규칙,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b) 장비에 대한 기술 정보(신청서에 포함)가 정확하며, (c) 담당자가 장비를 검사했으며, (d) 해당 장비가 24조, 1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업등록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는 www.nyc.gov/dep/cats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규칙 뉴욕시 행정법 24조, 1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보일러

시간당 열 입력률이 350,000 BTU 이상 4,200,000 미만인 보일러는 DEP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시간당 열 입력률이 4,200,000 BTU 이상인 보일러는 영업 허가서와 사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016년 5월 기준)

보일러 등록 신청서 또는 영업 허가서와 사업등록증 신청서는 DEP의 Clean Air Tracking System ("CATS") www.nyc.gov/dep/cats을 방문해 주십시오.

보일러 등록 및 사업등록증의 갱신 신청서는 "CA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CATS 계정을 만들려면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CATS 관련 질문은 Catsfeedback@dep.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8-595-3855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기타 질문 사항은 AirPermit@dep.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8-595-3855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규칙 뉴욕시 행정법 24조, 1장 & RCNY, 15조, 2 및 9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C. 퍼크 및 비퍼크 드라이 클리닝 업체를 위한 공지 게시:

드라이클리닝 사업체는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요 화학 물질의 목록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고객에게 잘 보여야 하며 "안전 데이터 시트("자재 안전 데이터 시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퍼크 및 비퍼크 드라이클리닝 세제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수 표지판을 다운로드하려면 www.nyc.gov/dep/drycleanersmsds 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또는 718-595-4436 번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표지판의 사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D.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거용 건물에서의 퍼크 드라이클리닝 규칙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2006년 7월 13일에 퍼크 드라이 클리닝 업체를 위한 특정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러한 요건 중에서 일부는 NYSDEC의 Part 232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보다 엄격합니다. 이 EPA 규칙에는 다음의 주거용 건물내 퍼크 드라이 클리닝 사업과 관련된 다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06년 7월 27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설치된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퍼크를 사용할 수 없다.
- ▶ 2005년 12월 21일(규칙 제안일)부터 2006년 7월 13일 사이에 주거용 건물에 설치된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는 2009년 7월 27일까지 퍼크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 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에 설치된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dep/perc를 참조해 주십시오.

III. DEP의 "알아야 할 권리" 요건

뉴욕시의 "지역사회의 알아야 할 권리" 법에 따라 드라이클리닝 업체들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물질 중에서 www.nyc.gov/dep/rtrkhazlist 의 DEP 위험물질 목록에 있는 "임계값 신고량"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모든 물질을 매년 DEP에 시설 재고 양식에 기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퍼크는 DEP 위험물질 목록에 “퍼클로로에틸렌”(“4염화에틸렌”이라고도 함)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퍼크 또는 기타 신고 대상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드라이클리닝 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시설 재고 신고서”(“FIF”)를 매년 3월 1일까지 접수 (FIF를 얻으려면 아래의 “계층 2” 링크 참조).
2. 모든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해 안전 데이터시트(“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도 함)를 첨부.
3. 이미 신고한 신고 대상 물질의 양이 질량으로 25% 이상 증가할 경우, 또는 이전에 FIF를 제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신고 대상 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FIF를 접수. **참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설을 방문하는 알아야 할 권리 담당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 (1), (2) 및 (3)의 사본을 구비.
4. 신고 대상 물질이 담긴 각각의 용기에 “화학 물질 고유”(CAS) 번호와 함께 라벨 부착, 태그 또는 마크 표시. 예를 들어, 퍼크(“퍼클로로에틸렌” 또는 “4염화에틸렌”)의 CAS #는 127184입니다. 이 라벨, 태그 또는 마크는 잘 알아보도록 영어로 적어서 진열해야 합니다.

참고: 알아야 할 권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P의 알아야 할 권리 (Right-To-Know) 부서에 718-595-4659번으로 전화하거나 DEP의 웹 사이트 www.nyc.gov/dep/tier2filing (온라인 접수 정보, 접수 지침, 규정, 양식의 사본, DEP 위험물질 목록, CAS 번호)를 방문해 주십시오.

IV. 응급 대응 (“위험물질 유출 신고서(SPILL BILL)”) 요건

1. “위험 물질”(아래 규정에 정의됨) 유출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311에 전화하여 유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파운드 이상의 퍼크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4염화에틸렌”이라고도 함) 유출 사고는 311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유출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유출 사실에 대한 통지서를 DEP에

DERTA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59-17 Junction Blvd. (1ST Floor Low Rise) Flushing, NY 11373-5108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유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질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와 서면 통지 요건(320절 참조)은 www.nyc.gov/dep/spillbill 에서 “위험물질 유출 신고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절에서 요구하는 통지 이외에도 위험물질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911으로 전화하여 경찰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상 유출 요건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718-595-4784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규칙 뉴욕시 행정법 24조, 6장 & RCNY, 15조, 11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V. 역류 예방 장치

드라이클리닝 장비(또는 보일러와 같은 다양한 기타 장비)가 있는 장소의 소유주는 모든 배수 장치에 승인된 역류 방지 장치(BPD)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주 면허를 획득한 전문 엔지니어(PE) 또는 뉴욕주 면허를 획득한 “건축사는 최초 BPD 설치를 위해 DEP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뉴욕시 공인 마스터 배관공(LMP)은 BPD를 설치해야 합니다(LMP는 뉴욕시 건물관리국(NYC Department of Buildings)에 “제한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BPD에 제출하는 최초의 시범 보고서에는 PE(또는 RA), LMP가 서명하고 봉인을 해야 하며, 장치를 테스트한 뉴욕주 공인 BPD 테스트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BPD를 위한 연례 테스트는 NYS 인증 테스트 담당자가 DEP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및 필요한 양식)에 대한 사항은 718-595-5463번으로 전화하거나 www.nyc.gov/dep/backflow 를 방문해 주십시오.

규칙 RCNY, 15조, 20장, 20-04절을 따라 주십시오.



VI. 오수 및 기타 물질을 일반 하수도에 폐기

RCNY 15조 19장 19-03(a)(15)절은 드라이클리닝 과정에 발생한 바닥, 침전물, 잔여물, 필터 또는 필터 소재를 일반 하수도, 하수구, 배관 등에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보푸라기, 흙, 먼지, 필터).

DEP는 하수도에 퍼크 관련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NYSDEC의 오수 방출과 관련된 “Part 232”절을 자세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DEP 규칙은 또한 퍼크로 오염된 오수나 폐기물을 하수도에 방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오수 처리 장치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필수 기록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NYSDEC의 232.9절에 따라), DEP 규칙은 퍼크로 오염된 오수를 수분 분리기와 이중 탄소 여과(또는 NYSDEC가 승인하는 다른 유사한 관리 기술)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RCNY 15조, 19장의 사본이 필요하시면 <http://rules.cityofnewyork.u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DEP의 오수 규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718-595-4730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규칙 RCNY, 15조, 19장(특히 19-01, 19-03절 및 19-12절 참조)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안내서에서는 다음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RCNY** = 뉴욕시 규칙 (<http://rules.cityofnewyork.us/>)
 - ◆ **뉴욕시 행정법** = 뉴욕시 행정관리 코드 (http://www.amlegal.com/codes/client/new-york-city_ny/)
 - ◆ **NYSDEC** =뉴욕주 환경보호국 (<http://www.dec.ny.gov>)
 - ◆ **PART 232** = 뉴욕주 법령, 규칙 및 규정, 6조, III장, Part 232,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시설” 예: NYSDEC 드라이클리닝 규정(<http://www.dec.ny.gov/chemical/38088.html>)
 - ◆ **퍼크** =퍼클로로에틸렌, 4염화에틸렌
-



DEP (nyc.gov/dep)를 방문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NYCWATER를 팔로우하세요